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33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배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4. 10. 28.
3. 회부연월일 : 2024.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승차정원(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승차정원을 초과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명)¹⁾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 ⑨ (생략)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설></u>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 ⑩ (현행과 같음) 제153조의2(벌칙) 제50조제10항을 위반하여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제156조(벌칙) ----- ----- -----과료----- ----- 1. ----- ----- -----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제9항(자전
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까지-----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 13. (생략)	----- ----- ----- ----- 2. ~ 13. (현행과 같음)
---	--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한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 억제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승합차등·승용차등·이륜차 등의 승차인원 위반 행위(제156조 제1호, 법 제39조제1항 위반)²⁾와 개인형 이동장치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2)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제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중략)…,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중략)…,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의 음주운전(제156조제11호, 제44조제1항 위반)³⁾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인원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는 것이 법체계상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 정원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타 위반행위 및 다른 차종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345

3)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